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9. 26 선고 2024가단2415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손성락

변 론 종 결 2024. 8. 29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전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 원,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11. 10. 5.자 소외 D 주식회사 납품 자재대금 관련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(2022. 6. 17. 기준 전체금액 25,947,134원, 그 중 원금 9,449,100원), 망인이 2019. 5. 15.부터 2020. 1. 15.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,5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 한다)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. 즉,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행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.

살피건대,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금원은 8회에 걸쳐 매달 또는 격월로 500,000원(2019. 8. 19.은 1,000,000원)씩 송금된 점, 피고는 위 금원이 가족공동체의 생활비용이라고 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(피고의 동생인 E 역시 피고의 모친인 F의 계좌로 2014. 1. 21.부터 2020. 12. 21.까지 114회에 걸쳐 매달 300,000원 가량을 송금하였다), 원고는 위 금원이 망인이 피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출이자 상당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관련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조중래

별지